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21호 2023. 12. 26.(화)

###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5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5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5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5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5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5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6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6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6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6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6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7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6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7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6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8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6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8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6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 10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p>	<p>1. 제안이유</p> <p>○ 구에서 관리·운영 중인 상징물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상징물의 종류(제2조)</p> <p>○ 구기, 문장(제3조, 제4조)</p> <p>○ 상징물의 변경, 관리(제5조, 제6조)</p> <p>○ 상징물 관련 사업(제7조)</p> <p>○ 상징물 사용 승인(제8조)</p> <p>○ 위반에 따른 조치(제9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54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旗):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문장: 별표 4
5. 나무: 느티나무
6. 새: 학
7. 꽃: 진달래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구기)** ①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할 수 있다.

**제4조(문장)**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 한다.

1. 심벌마크·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문장: 총무과
3. 새: 기획예산과
4. 나무·꽃: 공원녹지과

③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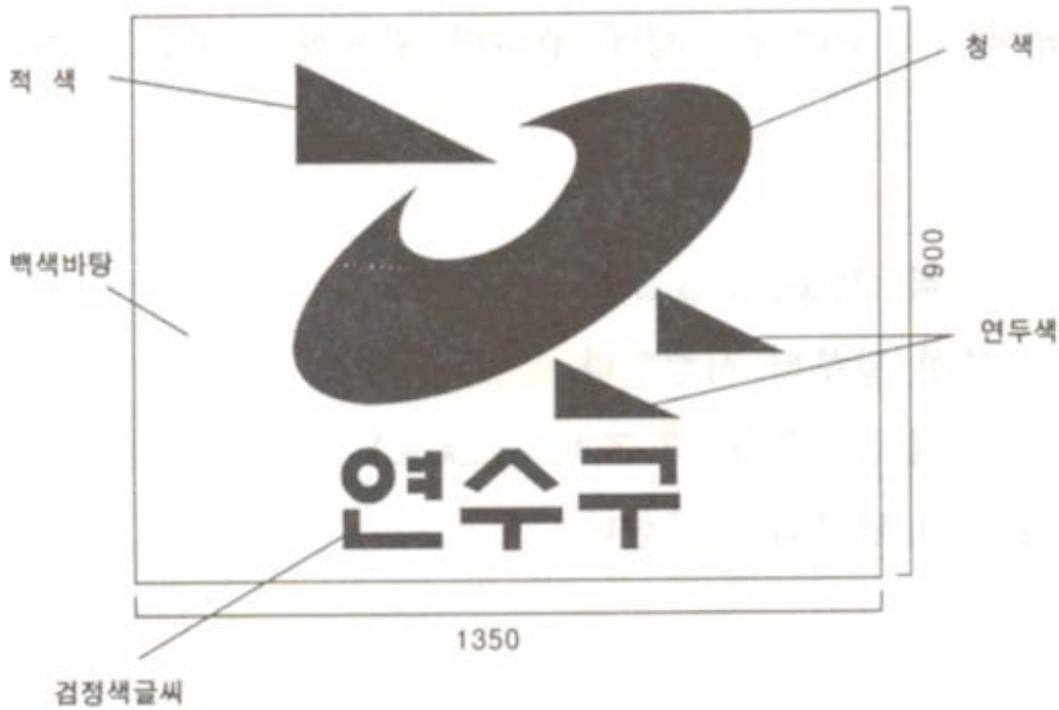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기(旗)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도안 및 색상



(2) 심볼 설명

- 역동하는 청색 타원의 모습은 인천의 바다를 상징하며 가운데 흰색 타원은 연수구를 상징
- 빨간색 삼각형은 “세계화”를 두 개의 녹색 삼각형은 “환경”에 대한 관심
- 전체적으로 연수구가 인천의 중심이 되는 21세기의 미래상



[별표 2]

심벌마크(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심벌마크



- 연수구의 BI "Better life Yeonsu"의 심벌마크는 21세기동북아의 물류, 향만의 중심지, 인천의 핵심인 연수구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것으로 선진구(區)로서의 위상과 쾌적한 삶의 질을 상징화
-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연수구를 초록의 띠와 붉은 해를 통해 표현했으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연수구민의 모습을 Y의 형태를 통해 표현

(2) 전용색상

PANTONE 376C	PANTONE 165C	PANTONE 2726C	PANTONE BLACK	PANTONE BLACK 6C	PANTONE COOL GRAY	PANTONE 872C
C60, Y100	M65, Y100	C80, M60	K100	K70	K50	GOLD

[별표 3]

캐릭터(제2조제1항제3호 관련)

(1) 기본형



(2) 캐릭터 의미

- 학은 시베리아대륙을 횡단하는 철새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연수구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상징화
- 청초한 모습과 고고한 자태는 구민의 문화수준과 깨끗한 주거환경으로서의 연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캐릭터로 살기 좋고 활기찬 느낌의 연수구의 이미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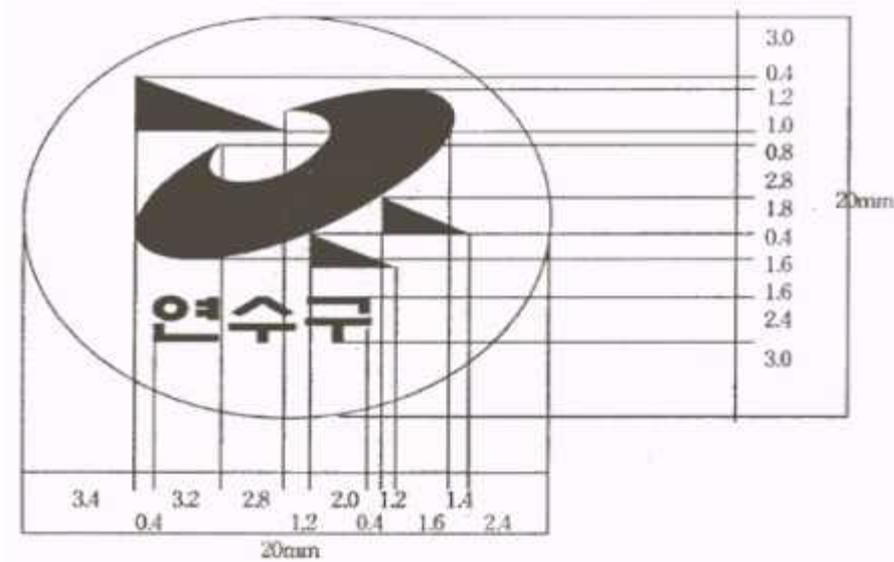
(3)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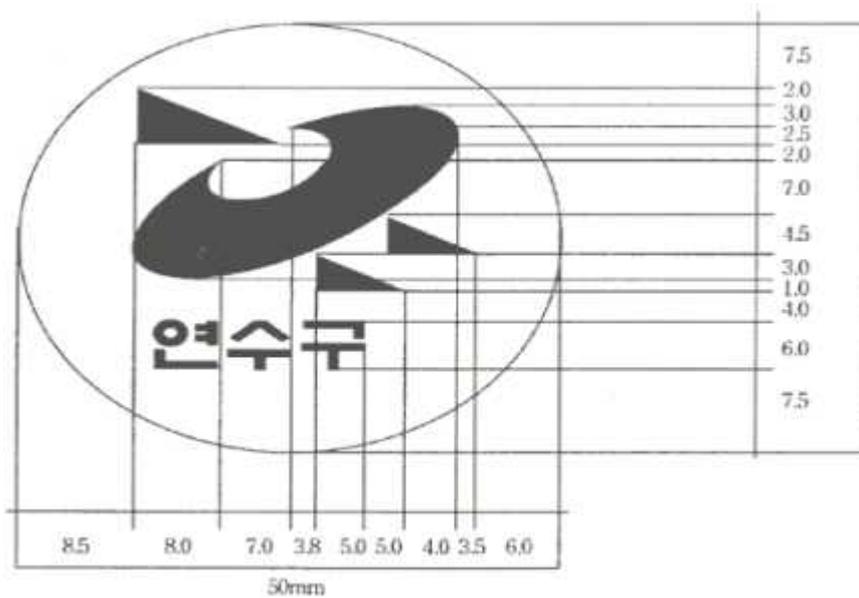
[별표 4]

문장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1) 문장 (철인)



(2) 약장





[별지 제2호서식]

<b>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b>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p>「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b>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b></p>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민선8기 2년차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 개편을 함.</p> <p>2. 주요내용</p> <p>○ 국 명칭 변경(제3조)</p> <p>○ 기획경제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제4조)</p> <p>○ 복지교통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제5조)</p> <p>○ 도시관리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제5조의2)</p> <p>○ 자치행정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제6조)</p> <p>○ 보건소에 두는 부서 신설 (제8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55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을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을 “(복지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를 “복지교통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도시교통국)” 을 “(도시관리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 을 “도시관리국장” 으로 한다.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교통국장” 을 “도시관리국장” 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 을 “도시관리국장” 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지원과장” 을 “경제산업과장” 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 을 “주택과장” 으로, “도시주택과” 를 “주택과” 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 <u>복지환경국</u>, <u>도시교통국</u>, <u>자치행정국</u>, <u>송도관리단</u>, <u>비전전략실</u>, <u>홍보소통실</u>, <u>감사실</u>을 둔다.</p>	<p>제3조(국 등의 설치) ----- ----- -- <u>복지교통국</u>, <u>도시관리국</u>---- ----- -----.</p>
<p>제4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u>기획예산과</u>, <u>경제지원과</u>, <u>일자리정책과</u>, <u>재무회계과</u>, <u>세무1과</u>, <u>세무2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제4조(기획경제국) ① ----- -- <u>기획예산과</u>, <u>경제산업과</u>, <u>위생정책과</u>, <u>재무회계과</u>, <u>세무1과</u>, <u>세무2과</u>, <u>토지정보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u>복지환경국</u>) ① <u>복지환경국</u>에 <u>복지정책과</u>, <u>사회보장과</u>, <u>노인장애인과</u>, <u>여성아동과</u>, <u>출산보육과</u>, <u>청소행정과</u>, <u>위생정책과</u>, <u>환경보전과</u>를 둔다.</p> <p>② <u>복지환경국장</u>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p>	<p>제5조(<u>복지교통국</u>) ① <u>복지교통국</u>에 <u>복지정책과</u>, <u>사회보장과</u>, <u>노인장애인과</u>, <u>여성아동과</u>, <u>출산보육과</u>, <u>교통행정과</u>, <u>차량민원과</u>를 둔다.</p> <p>② <u>복지교통국장</u>----- -----.</p>
<p>제5조의2(<u>도시교통국</u>) ① <u>도시교통국</u>에 <u>건설과</u>, <u>건축과</u>, <u>도시주택과</u>, <u>도시계획과</u>, <u>공원녹지과</u>, <u>토지정보과</u>, <u>교통행정과</u>, <u>차량민원과</u>를 둔다.</p> <p>② <u>도시교통국장</u>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p>	<p>제5조의2(<u>도시관리국</u>) ① <u>도시관리국</u>에 <u>건설과</u>, <u>건축과</u>, <u>주택과</u>, <u>도시계획과</u>, <u>청소행정과</u>, <u>환경보전과</u>, <u>공원녹지과</u>를 둔다.</p> <p>② <u>도시관리국장</u>----- -----.</p>

<p>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 에 <u>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 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제8조(소장 등) ① (생략)</p> <p>② 보건소에 <u>보건행정과, 건강증 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 활지원센터</u>를 둔다.</p> <p>③ (생략)</p>	<p>제6조(자치행정국) ① ----- -- <u>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 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소장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보건행정과, 건강 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 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u>- -----.</p> <p>③ (현행과 같음)</p>
--	---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p>기획경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3.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li> <li>4.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li> <li>5.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li> <li>6.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7.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li> <li>8.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li> <li>9.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0. 물가안정·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li> <li>11.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li> <li>12. 연료수급 및 유류·가스에 관한 사항</li> <li>13. 농·축·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li> <li>14.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li> <li>15.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li> <li>16.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li> <li>17.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li> <li>18.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li> <li>19.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li> <li>20.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li> <li>21.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li> <li>23.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4.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5.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26. 계약심의업무에 관한 사항</li> <li>27.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li> <li>28.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9.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li> <li>30. 구 청사 및 동 청사 건립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li> <li>31. 구 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li> <li>3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li> <li>3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li> <li>34.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li> <li>35.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li> <li>36.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37.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li> <li>38.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li> <li>39.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li> <li>40.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li> <li>41.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li> <li>4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li> <li>43. 그 밖에 기획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li> </ol>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 제 5 조 관 련 )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교통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서비스 제공 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li> <li>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li> <li>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li> <li>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li> <li>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li> <li>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li> <li>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li> <li>9.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li> <li>10.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li> <li>11.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li> <li>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li> <li>1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li> <li>14. 여성·가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li> <li>15.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6. 저출산대책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li> <li>17.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li> <li>18.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li> <li>19.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li> <li>20.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2.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li> <li>2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li> <li>2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li> <li>25.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li> <li>26.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li> <li>27.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li> <li>28.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li> <li>29.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li> <li>30.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li> <li>31. 그 밖에 복지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li> </ol>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 제 5 조 의 2 관 련 )**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관리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li> <li>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li> <li>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li> <li>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li> <li>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li> <li>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li> <li>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li> <li>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4.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li> <li>15.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li> <li>16.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li> <li>17.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li> <li>1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li> <li>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li> <li>20. 폐기물에 관한 사항</li> <li>21.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li> <li>22.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li> <li>23.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4.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li> <li>25.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li> <li>26.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7.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li> <li>2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29.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li> <li>30.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li> <li>31.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li> <li>32.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li> <li>33. 그 밖에 도시관리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li> </ol>

【별표 4】

## 사 무 분 장 표 ( 제 6 조 관 련 )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li> <li>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li> <li>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li> <li>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li>5. 국내·외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li> <li>6. 민방위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7.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li> <li>8.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li> <li>9.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li> <li>10.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li> <li>1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li> <li>12.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li> <li>13.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4. 내·외국인간 등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li> <li>15.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li> <li>16.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li> <li>17.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8.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li> <li>19.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li> <li>20.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li> <li>21.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li> <li>22.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li> <li>23.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li> <li>24.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li> <li>25.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li> <li>26.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li> <li>27.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li> <li>28.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li> <li>29.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0.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li> <li>31.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li> <li>3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li> <li>33.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li> <li>34. 그 밖에 다른 국·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수준의 인력배치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 현안사항 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인력 재조정하고자 함</li> </ul>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의 총수: 1,009명(변동없음)</li> <li>○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56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9	645	26	75	27	236
정무직 계	1	1	-			
구청장	1	1	-			
일반직 계	1,003	639	26	75	27	236
3급	1	1	-			
4급	7	5	1	1		
5급	62	34	2	10	1	15
6급 이하	933	599	23	64	26	221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별정직 계	4	4	-			
5급 상당	1	1	-			
6급 상당 이하	3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전보체계를 개정하여 인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조정(별표 1)</p> <p>-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삭제</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57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위임사무명란과 근거법령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1	(생 략)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2	<삭 제>	<삭 제>	
3 ~ 24	(생 략)	(생 략)		3 ~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장기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조례 제명 변경</p> <p>○ 적용범위 신설(제2조)</p> <p>○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규정(제3조, 제4조)</p> <p>○ 구체적인 우대 및 지원방안 마련(제5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58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

천광역시 시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상)** ①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로 한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연간 2건 이상씩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해부터 5년간 제1항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추첨 방식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의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임을 입증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 교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1회 면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납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2년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성실납세자 인증서

번호 : 0000 - 0000호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성명(단체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위 사람(단체·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p>	<p><b>1. 제안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일(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5년)하고,</li> <li>○ 상위법령·인용규칙의 변경사항, 조문 순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li> </ul> <p><b>2. 주요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제25조) (현재) 2023. 12. 31. → (개정) 2028. 12. 31.</li> <li>○ 상위법령, 인용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 (제19조, 제23조)</li> <li>○ 정식 명칭 및 약칭 등 정비 (제5조, 제22조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li> <li>○ 위원회 조문 순서 정비 (제6조제1항·제5항, 제6조의4, 제7조)</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59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회복지 사업” 을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말한다..” 를 “말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 금고”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금고”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 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 으로, “1이상” 을 “1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전임자” 를 “전임자 임기” 로 한다.

제6조의4의 제목 “(회의)” 를 “(회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 를 “위원회의 회의”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 을 “위원” 으로 한다.

제6조의6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위원회의 회의” 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호 중 “대한복지지원” 을 “대한 복지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9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포함한

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를 “노인회 및 단체”로, “2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타 자활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6월이상”을 각각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26조의4제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출납 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5이하”를 “5 이내”로 한다.

제2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5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중전의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u>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사회복지 사업</u>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자활사업” 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u>말한다..</u></p> <p>4. 삭제</p> <p>5. (생략)</p> <p>6. “차상위계층 “ 이란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u>」(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7.·8. (생략)</p> <p>제3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p> <p>1. ~ 7. (생략)</p> <p>8. <u>기타</u> 수입금</p>	<p>제2조(<u>정의</u>) ----- ----- 뜻은 ----- -----.</p> <p>1. ----- ----- <u>사업</u>-----.</p> <p>2. (현행과 같음)</p> <p>3. ----- ----- ----- <u>말한다.</u></p> <p>5. (현행과 같음)</p> <p>6.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u>」----- ----- -----.</p> <p>7.·8.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재원)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의</u> -----</p>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  
-----  
-----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의3(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의4(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 1 이상 -----  
-----.

<삭제>

제6조의3(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 전임자 임기-----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4(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  
의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제6조의6(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  
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  
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호에서  
이동 2014.7.28.>

제8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 위원-----  
-----  
-----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의6(수당) ----- 위원회의  
회의-----  
-----  
-----.

<삭 제>

제8조(대상사업) -----  
-----  
-----.

1. (생략)
2. 삭제
3.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복지지원 사업
- 4.·5. (생략)
6.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2. (생략)
3.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4. 노인회(구지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1. (현행과 같음)
3. -----  
-----  
-----  
--- 대한 복지지원 ----
-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원대상) -----  
-----  
-----  
-----.

- 1.·2.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

제11조(대상사업) -----  
-----  
-----.

- 1.·2. (현행과 같음)
3. -----  
----- 그 밖에 -----  
-----
4. ----- 포함한다-----

5. ~ 7. (생략)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 (생략)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기타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지원 사업

6. ~ 15. (생략)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③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③ ----- 노인회 및 단체-----  
----- 2개월 이내-----  
-----.

제13조(사업의 범위) -----  
-----  
--.

1. ~ 4. (현행과 같음)

5. 자활사업-----  
-----

6. ~ 15. (현행과 같음)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⑤·⑥ (생략)

제1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  
----- 6개월 이상 -----  
----- 6개월 이상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  
-----  
-----.

제2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등)

① ----- 회계연도-----  
----- 출납폐쇄 후 -----  
-----.

② -----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존속기한)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  
----- 범위 -----  
-----  
-----.

④ -----  
-----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  
----- 5 이내 -----  
-----  
-----.

제23조(준용)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25조(시행규칙) -- 조례의 -----  
-----.

제24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li> <li>○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고 함.</li> </ul>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 (제3조)</li> <li>○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당 명칭 변경 및 금액범위 구체화 (제4조제1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배우자 복지수당 → (개정) 배우자 수당</li> <li>- (현재) 월 5만원 → (개정) 월 5만원 범위 내</li> </ul> </li> <li>· 지급 요건 및 지급 시기 정비 (제3조, 제5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 → (개정)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li> <li>- (현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개정) 지급연령에 도달한 달</li> </ul> </li> </ul> </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0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를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 로, “거소신고를” 을 “주민등록” 으로, “둔” 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 을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 ) 을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 ) ” 으로,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를 “5만원 범위 내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수당” 을 “수당” 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당” 을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수당은 신청한” 을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제1호 중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을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로 한다.

제7조 중 “대상자에 대하여” 를 “대상자에게”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복지수당” 을 “수당” 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 수당)” 으로, “참전 유공자증” 을 “국가보훈등록증”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참전유공자증” 을 각각 “국가보훈등록증”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연수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p> <p>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 이라 한다) 지급 : 월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p> <p>4. · 5. (생략)</p>	<p>제3조(지원대상자) ----- ----- ----- <u>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u> ----- ----- <u>주민등록</u> ----- <u>두고 거주하고 있는</u> ----- <u>국가보훈부장관</u>----- ----- --.</p> <p>제4조(지원사업) ①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수 <u>당(이하 “배우자 수당”</u> ----- ----- <u>5만원</u> <u>범위 내(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u></p> <p>4. · 5. (현행과 같음)</p>

②·③ (생략)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⑤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신청 등) ① -----  
----- 별지 제1호 서식-----  
-----  
-----  
-----  
----- 별지 제2호 서식-----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수당-----  
----- 별지 제1호 서식-----  
-----  
-----  
-----  
----- 별지 제2호 서식-----  
-----  
-----.

⑤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제5조의2(지급방법)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6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 3. (생략)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방법) ①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

----- .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중지) -----  
----- .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  
-----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조치) -----  
----- 대상자에게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li> <li>○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고 함.</li> </ul>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제2조)</li> <li>○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 요건 및 지급 시기 정비(제8조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 → (개정)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li> <li>- (현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개정) 지급연령에 도달한 달</li> <li>- (신설) 타 시·도에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li> </ul> </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1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인천광역  
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  
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국  
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어느하나” 를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훈 선양 사업” 을 “공훈선양사업” 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 중 “창달” 을 “발전” 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장” 으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  
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두고, 계속 3개월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65세 이상” 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단  
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

전유공자 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7조 중 “(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 을 “(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을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 을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른 시·도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제2호 중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본문 중 “예산 범위안” 을 “예산의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참전유공자로서” 를 “참전유공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 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65세 이상” 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서”를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당”을 “건강수당”으로,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을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급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중 “국가보훈대상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u>인천광역시연수구</u>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국가보훈 기본법」</u> -----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u>국가보훈처장</u>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u>국가보훈부장관</u>----- -----.</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u>인천광역시연수구</u>(이하 “구”라 한</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u>인천광역시 연수구</u>-----</p>

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3. 4. (생략)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의 발굴 지원
4. ~ 7. (생략)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4. (현행과 같음)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  
-----  
----- 공훈선양사업-----  
-----.

1. 2. (현행과 같음)
3. ----- 발전-----  
-----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 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사업비 등

제5조의 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

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  
-----  
----- 두고 거주하는 65  
세 이상의 -----  
----- 범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

<신 설>

② (생 략)

제7조(수당의 신청)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생 략)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 설>

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의 신청) -----  
-----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단 -----  
--.

③ -----  
-----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  
-----.

④ 다른 시·도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생략)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0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생략)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

급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 -----  
-----  
-----.

1. (현행과 같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

제10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  
-----  
-----  
-----.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  
-----  
----- 예산의 범위 ----  
-----  
----- .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참전유공자 -----  
-----

지원하지 않는다.

② (생략)

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건강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수당은 6월 25일과 12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별지 제2호서식-----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

제12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① -----  
-----  
-----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  
----- 범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3호서식-----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강수당-----  
-----

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⑥ (생략)

제13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료 지급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복지지원) -----  
-----  
-----.

1. ~ 3. (현행과 같음)
4. ----- 범위-----

제15조(지급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li> <li>○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li> </ul>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2023년 12월 31일</li> <li style="padding-left: 20px;">→ (변경) 2028년 12월 31일</li> </ul> </li> <li>○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5조)</li> <li>○ 수입금 납입고지 변경(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고지</li> </ul> </li> <li>○ 그 밖에 자구 수정 등 정비</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2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26조” 를 “「의료급여법」 제26조” 로 한다.

제3조 중 “세입하고” 를 “세입으로 하고” 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 라” 를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중” 을 “「지방회계법」에 따른” 으로, “관하여는” 을 “관하여” 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중 “조례에” 를 “조례에서” 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 특별회계”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로,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9조” 를 “「지방재정법」 제9조”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 제26조----- ----- ----- ----- ----- -----.</p>
<p>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u>세입</u>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u>급여대상자</u>(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u>세출</u>로 한다.</p>	<p>제3조(세입 및 세출) ----- ----- <u>세입</u>으로 하고----- <u>수급권자</u>(이하 “수급권자”라 ----- -----.</p>
<p>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u>관하여는</u>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p>	<p>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에 따른 ----- ----- <u>관하여</u> ----- ----- ----- -----.</p>
<p>제6조(수입)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u>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p>	<p>제6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u>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p>

하여 납입의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

③-----  
----- 지체 없이 -----  
-----.

제10조(준용) -- 조례에서 -----  
-----  
-----.

제11조(존속기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2028년 12월 31일 -----  
-----  
----- 「지방재정법」 제9조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p>	<p><b>1. 제안이유</b></p> <p>○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수구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p> <p><b>2. 주요내용</b></p> <p>○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및 제2조)</p> <p>○ 구청장의 책무(제3조)</p> <p>○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제4조)</p> <p>○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제5조)</p> <p>○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제6조)</p> <p>○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제7조)</p> <p>○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제8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3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

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제11조의2)</p> <p>○ 그 밖에 상위법령 변경사항 등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4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인경우중”을 “이하인 경우 중”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라한다”를 “위원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을 “위원” 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필요한 경우에” 를 “자문에 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 “들을” 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위원” 을 “위원” 으로 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로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제16조의2제3항 중 “감면자” 를 “감면대상”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에 의한” 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별표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를 “별표 7에 따른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  
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 3. (생략)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  
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  
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  
음)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 사람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임직원

5. -----  
----- 「비영리 민간단  
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  
영리 민간단체-----  
-----

6. -----  
----- 임직원

7. (현행과 같음)

③ -----  
-----  
----- 전임위원 임기-----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⑧ (생략)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자문에 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

⑦·⑧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비밀준수) 위원 -----  
-----  
-----  
-----.

제1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  
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  
법」 제9조에 따른다.

제1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  
직지정) ① (생략)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연  
수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부  
터 제8호
2. 영 제40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4. (생략)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  
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부  
터 제5호

제11조의2(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  
-----  
-----  
-----.

제1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  
직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연  
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4조(세출) -----  
-----.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3. 4. (현행과 같음)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 -----  
-----  
-----  
-----  
-----.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2. 삭 제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16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3. (현행과 같음)

②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감면대상, -----  
-----.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  
-----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

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1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  
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  
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  
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  
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  
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가산금) ① (생략)

제19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한다.

-----  
-----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가산금) (현행 제1항과 같  
음)

제19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  
조-----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별표 7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p>	<p>1. 제안이유</p> <p>○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p> <p>○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제3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5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훈련장”이란 제17사단 제507보병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투명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구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별 여건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을 자율화</li> </ul> <p>○ 주민자치위원 해촉 절차 및 사유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해촉 의결 기준을 표준안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자치회 내부 문제 발생 시 외부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p>○ 중간 지원조직 근거 삭제</p> <p>○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 등 절차 준수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미이행 시 구청장이 해당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6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주민자치회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 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 업무: 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의 처리

4. 그 밖의 업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는 업무의 수행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② 제1항제4호에서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법인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제22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

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2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순위도 함께 정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

⑧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천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며, 선거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 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⑦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보궐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 ⑧ 제6항에 따라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선출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지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 근무자 및 자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사무국장과 사무국 근무자, 자원활동가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해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총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총회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인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

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해 그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재해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회의 참석자는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회의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서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또는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촉할 때에 그 해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요청이 의결된 날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6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각 동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각 동 자치회장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29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30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

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이 종전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결원 보충 등을 사유로 위촉된 경우에는 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그 임기 또는 연임기간 만료 후 이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지자체의 산재 예방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산재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li> </ul>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제1조, 제2조)</li> <li>○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li> <li>○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li> <li>○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li> <li>○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제7조)</li> <li>○ 실태조사 등의 위탁(제8조)</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7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조사 실시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체육시설 운영자 귀책 사유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li> </ul>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반환 규정 보완 (제10조)</li> <li>○ 상위법령 제명 변경(제9조, 제12조)</li> <li>○ 인용조문 등 정비(제9조, 제10조, 별표 2)</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8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로, “장해등급”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가.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10%”를 각각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나목 중 “10%” 를 “10퍼센트”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연10%” 를 “연 10퍼센트” 로 한다.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가. 사용개시일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부터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을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프로그램 수강료의 비고란 중 “만13세 이상 만18세” 를 “13세 이상 18세” 로 하고, 같은 호 일일 사용료의 비고란 중 “만13세 이상 만18세” 를 “13세 이상 18세”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100분의 50 감면</p> <p>가. · 나. (생략)</p> <p>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u>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u>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p> <p>라. ~ 사. (생략)</p> <p>아.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p> <p>자. ~ 타. (생략)</p> <p>2. · 3. (생략)</p> <p>4. 100분의 10 감면</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 -----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p> <p>라. ~ 사. (현행과 같음)</p> <p>아.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 -----</p> <p>자. ~ 타. (현행과 같음)</p> <p>2. · 3. (현행과 같음)</p> <p>4. -----</p>

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나. (생략)

③ (생략)

④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 사용의 경우

가. (생략)

나.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신설>

가.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료-----  
-----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가. (현행과 같음)

나. -----  
----- 10퍼센트 -----

다. ----- 10퍼센트 -----  
-----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

2. 월 회비를 납입한 경우  
 가. (생략)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 4. (생략)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  
 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  
 거나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

- 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가. 사용개시일 6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1  
 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  
 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  
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부터의 미이용일수  
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  
상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0퍼센트 -----  
 -----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  
 -----  
 -----  
 -----  
 ----- 그 밖에 -----  
 -----
- ② -----  
 -----

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10%를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  
여야 한다.

제1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  
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  
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차  
례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  
-----.  
-----  
----- 연 10퍼센  
트-----  
-----.

제1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  
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행령」 제19조제2항-----  
-----.  
-----

③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3.6.11.시행)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지명위원회의 구성 변경(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위원 수: 7명 이내 → 10명 이내</li> <li>- 민간위원 수: 3명 이상 → 6명 이내</li> </ul> <p>○ 지명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요건 정비(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위원 중에서 호선</li> <li>→ (변경)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i> </ul> <p>○ 위원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규정 신설 (제7조 ~ 제9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69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로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결정한다” 를 “의결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할구역내” 를 “관할구역 내” 로 한다.

####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 를 “제2조제2호” 로, “관할 구역내” 를 “관할구역 내” 로, “자연지명” 을 “자연지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래” 를 “유래,” 로, “지명중” 을 “지명 중” 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6조) 중 “지명을 심의조정” 을 “지명의 심의·조정” 으로,  
“구·동의 소속공무원” 을 “관계 공무원” 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위원회” 로, “7명” 을 “10명” 으로, “구성한다” 를 “구성하  
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를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중 3명 이상” 을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위원회” 를 “위촉위원을 제3항  
에 따른” 으로 한다.

####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규정)” 을 “(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문화체육과장” 을 “지명업무 담당” 으로, “소관업무 담당주사” 를 “지명업무 담당자” 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제4호 중 “위원” 을 “출석위원” 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중전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u>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7명</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u> 중에서 <u>호선한다</u>.</p> <p>③ <u>위원</u>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관계공무원</u></li> <li>2. <u>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명 이상</u></li> <li>3. (생략)</li> <li>④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u></li> </ol>	<p>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u>----- ----- ----- ----- -----.</p> <p>제5조(구성) ① <u>위원회</u>----- ----- ----- ----- <u>10명</u> ----- <u>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u>.</p> <p>② ----- ----- ----- <u>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u>(이하 “위원”이라 한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u></li> <li>2. ----- ----- <u>사람</u></li> <li>3. (현행과 같음)</li> <li>④ -----</li> </ol>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생략)

<신설>

<신설>

-----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 -----  
-----.

제6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생략)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생략)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 관할구역 내-----  
자연지명, -----  
-----.

② ----- 유래, -----  
----- 지명 중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견청취) ----- 지명의 심의·조정 -----

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생략)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청장이 정한다.

<신설>

<신설>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

-----  
관계 공무원-----  
-----  
-----.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  
-----  
-----.

1. ~ 3. (현행과 같음)
4. 출석위원 -----
5.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  
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  
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  
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  
지명업무 담당-----  
지명업무 담당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 지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금연구역 추가 지정(안 제5조)</p> <p style="margin-left: 20px;">-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70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인” 을 “다른 사람”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이하 “구” 로 한다” 를 “이하 “구”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 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제5조제3항 중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 를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2. (생 략)</p> <p>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로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p> <p>4. ~ 8. (생 략)</p> <p>&lt;신 설&gt;</p> <p>9. (생 략)</p> <p>② (생 략)</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다른 사람</u>----- ----- -----.</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이하 “구”</u> <u>라 한다</u>----- ----- ----- -----</p> <p>4. ~ 8. (현행과 같음)</p> <p>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④ (생략)

③ -----  
-----  
----- 범위를 인천광  
역시 연수구 구보-----  
-----.

④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민선8기 2년차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변경 기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조정 및 반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71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라목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도시교통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 략)</p> <p>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기획복지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복지환경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바. (생 략)</p> <p>3. 자치도시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도시교통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사. (생 략)</p> <p>③ (생 략)</p>	<p>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복지교통국</u> ----- ----</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바. (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도시관리국</u> ----- ----</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사.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여 지방의원 징계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고자 함.</li> </ul>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명칭 변경</li> <li>○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li> <li>○ 제목변경 등 정비(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인 등 검직 신고에서 검직 금지로 변경</li> </ul> </li> <li>○ 징계대상 위반행위 확대(제9조)</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72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연수구의회 의원”을 “연수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구의회 의원”을 “연수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 “서식,”을 “서식에 따르

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겸직기관·단체”를 “겸직기관·단체”로 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은 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구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한 기관·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신고)”를 “(겸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제6조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별표] 징계기준에서 4. 겸직신고 위반 내용 중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을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 계 기 준 (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취소</li> <li>- 면허정지</li> </ul> </li> <li>○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 미만 확정판결</li> </ul> </li> <li>○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li> </ul> </li> <li>○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li> <li>○ 성폭력, 성희롱</li> </ul>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2.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세</li> <li>○ 면탈</li> <li>○ 금품수수</li> </ul>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3.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행위의 제한 위반</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ul> </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 허위신고</li> </ul> </li> <li>○ 계약체결 제한 위반</li> <li>○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li> </ul>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4.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지연등</li> </ul> </li> <li>○ 겸직 거짓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 거짓신고</li> </ul> </li> <li>○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li> </ul>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5. 겸직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li> </ul>	<p>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u> <u>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u>연수구의회의원</u>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윤리강령) 인천광역시 <u>연수구의회의원</u>(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 5. (생략)</p> <p>제5조(겸직신고) &lt;신설&gt;</p>	<p><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u> <u>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u> <u>조례</u></p> <p>제1조(목적) ----- <u>연수구의회 의원</u>-----</p> <p>제2조(윤리강령) ----- <u>연수구의회 의원</u>-----</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겸직신고) ① <u>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u></p>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

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의장-----  
-----  
-----  
----- 서식에 따르고, -----  
-----  
-----.

③ ----- 제2항-----  
-----  
-----  
-----.

④ -----  
----- 검직기관  
----- ·단체-----  
-----.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  
-----

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 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따라 -----  
-----  
-----.

② 의원은 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구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한 기관·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8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제6조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한 기관·단체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신고를 한 경우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징계 등) ① -----  
-----  
-----  
-----.

-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

-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 3. 수익계약체결 제한자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
-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한 경우
- 5. 의원이 구와 계약 체결한 경우
-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② (생략)

지의무 위반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익계약 제한위반
-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삭제>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2022.12.26.)한 「지방 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의원 구급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강화 (제6조제1항)</p> <p>○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등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제6조제2항)</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7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 본문 중 “제2조”를 “제2조, 제3조”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월정수당  
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  
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  
서 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u>아니한다</u>.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u>의정활동비</u>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lt;신 설&gt;</p>	<p>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제2조, 제3조 ----- ----- ----- <u>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u> --- <u>의정활동비, 월정수당</u> -----.</p>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u></p> <p>1. <u>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u></p>

<신 설>

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  
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  
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  
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  
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  
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  
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  
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  
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  
수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923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규정」
2. 개정이유
  - 가. 유소년스포츠단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 선수 모집 대상 확대
  - 나. 성적 부진 선수에 대한 탈퇴 규정 마련을 통해 효율적 운영 도모
3. 주요내용
  - 가. 선수 모집 지역제한 완화(안 제9조제1항)
  - 나. 성적미달에 대한 배제규정 마련(안 제10조제1항제3호)

####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8.(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749-7322, FAX 749-7289
- E-mail : doncare@korea.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5. 참고자료

가. [붙임1] 조례 개정(안)

나.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독은 학년별 2명 이내에서 모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을 선수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수 개인의 성적이 매우 저조하고 향후 개선가능성이 없다고 감독이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누적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탈퇴와 관련한 누적 성적의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수를 탈퇴시키는 경우의 누적 성적은 이 훈령 발령 이후의 성적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선수의 모집·선발) 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고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lt;단서 신설&gt;</p> <p>② ~ ⑥ (생략)</p> <p>제10조(선수의 탈퇴) ① 단장은 스포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p> <p>1. 2. (생략)</p> <p>&lt;신설&gt;</p> <p>②·③ (생략)</p>	<p>제9조(선수의 모집·선발) ① ---- ----- ----- ----- ----- ----. <u>다만, 감독은 학년별 2명 이내에서 모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을 선수로 추천할 수 있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선수의 탈퇴) 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선수 개인의 성적이 매우 저조하고 향후 개선가능성이 없다고 감독이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누적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947호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안) 공람 ·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2일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람기간 : 2023년 12월 22일 ~ 2024년 1월 5일
2. 공람장소 : 연수구청[원인재로 115, 4층 도시주택과]☎032-749-8627),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비류대로256번길 8-14, 601호]☎032-832-8204)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공람
4. 의견서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5.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내용
  - 가. 사업의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시 행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다. 시 행 면 적 : 26,984.1㎡
  -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
  - 마. 사업시행자
    - 1)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상국)
    -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 8-14, 601호
  - 바.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1) 건폐율 : 18.26%, 용적율 : 249.96%, 연면적 : 90,245.49㎡
    - 2) 아파트 8개동(지상29층/지하2층) 652세대 및 부대 · 복리시설

3) 용도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아파트 : 56,342.31㎡, 부대복리시설 : 32,590.87㎡, 근린생활시설 : 1,312.31㎡

4) 건축면적 : 4,210.33㎡

5)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6) 주차대수 : 829대

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 3,563.0㎡, 공원365.9㎡

자. 주요 변경내용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세대수(649세대 → 652세대) 변경

6. 관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의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 랑 의 건 서				
사 업 명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의견 제출인	이해관계	조합원( ) / 토지및건축물소유자( ) / 세입자( ) / 기타권리자(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권리명세			
공람의견 내 용				

##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2. 26.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46-1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2-1호선)
- 명 칭 : 소로 2-1호선 도로확장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없음)

- 도로 폭 B=8m → B=10m 확장 구간(L=270m 중 128m) 보도 신설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 명 : (주)서해종합건설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6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5. 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붙임』 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주소	지번			도로내	도로외		
1	옥련동	146-12	임	724	272	-	272	소2-1호선
2	옥련동	산22-6	임	5,469	34	-	34	
3	옥련동	산22-26	임	905	1	-	1	

## 용 지 조 서 (변경 없음)

일련 번호	동명	지번	지 목	공 부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7,098	307					
1	옥련동	146-12	임	724	2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2	옥련동	산 22-6	임	5,469	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6층	(주)서해종합건설			
3	옥련동	산22-26	임	90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